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경제 정책요구안

2020년 3월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목 차

■ 21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요구

- 제도부문의 요구

요구 1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제정

요구 2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도모

요구 3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 및 기업 환경 마련

요구 4 지방정부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 일자리 균형발전부문의 요구

요구 5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요구 6 사회적경제를 통한 프리랜서(플랫폼) 문제해결

요구 7 사회적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 공공혁신부문의 요구

요구 8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생활SOC 사업 성공과 지역(마을) 활성화

요구 9 공공분야 서비스사업의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운영 확대

요구 10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활성화

■ 사회적경제 부문별 정책 제안

- 사회적기업 부문

- 자활기업 부문

- 마을기업 부문

- 협동조합 부문

- 공정무역 부문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맞이하며

누구든 시대의 위기와 소멸을 말한다.

계속 더워지는 지구와 함께 녹아내리는 빙하와 수억의 생명을 앗아간 호주의 불길을 바라보며 시대의 위기와 소멸을 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녹아내리고 타들어가는 것이 어찌 지구 뿐 인가 거대한 플랫폼의 맷돌아래 노동이 녹아내리고 지방은 소멸하고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 몰리고 수많은 청년은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 전환과 혁신을 말한다.

시대의 전환과 우리사회의 혁신을 위한 주장의 성찬들 속에 사회적경제가 던지는 이 작은 목소리가 어떤 울림을 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시대를 전환하고 사회를 혁신하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꿈처럼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기에 더 많은 시민과 정치인들이 사회적경제를 알고 이해하기를 바라며 사회로 발신한다.

자유로운 사회로 가는 길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개인의 힘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목적을 협동적 행위를 통해 성취하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에서 시작하여 성장해 왔다. 오늘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인간 경제활동의 민주화를 통해 수많은 불안정과 소외를 넘어 인류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로운 사회로 가는 길을 만드는 데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이 아름다운 길에 시민과 정치인이 함께 하길 바란다.

사회적경제에 투표하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역과 부문의 요구를 모아 사회적경제 공동공약이라는 이름으로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출하며 각 정당 및 후보들이 한국사회적경제 연대회의의 요구를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총선 이후에도 사회적경제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살피고 사회적경제의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소멸하는 지역, 벼랑 끝으로 내 몰리고 있는 노동자, 소상공인, 방황하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아름다운 집이고 싶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전환과 혁신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사회적경제에 투표하라!고 호소한다.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10대 요구

[제도 부문]

①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제정

1. 정당별 사회적경제 기구 구성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2.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통합적 전달체계 논의
3. 사회적경제 관련법 발의·제정

②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도모

1.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및 제도 마련
2.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보교류와 협업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및 제도 마련
3.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기반 및 제도 마련

③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 및 기업 환경 마련

1. 사회적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선
2.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있어 취득세 과세 문제 해결
3. 등기법제의 행정효율성 개선

④ 지역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1. 지역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 조례의 제정
2. 지역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를 위한 민·관 협의 구조 마련
3. 지역 사회적경제 기금이 전문성 있는 민간 사회적금융 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법 개정
4.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이 조성한 자조기금에 지역기금 매칭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일자리 균형발전]

⑤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1. 초·중·고 및 대학(원) 공식·비공식 교육과정의 사회적경제 교육 접근성 확대
2. 취·창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넘어 주거·금융지원 등 종합 정책으로 변화
3. 청년 당사자의 주체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⑥ 사회적경제를 통한 프리랜서(플랫폼) 문제해결

1.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및 협의회 활성화 지원
2.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
3. 당사자조직을 포함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⑦ 사회적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1.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기반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2. 소상공인의 자기개발 및 휴식을 위한 휴가제도 마련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소상공인 인력지원 사업 시행

[공공혁신]

⑧ 생활 SOC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1.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주체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 구축
2. 사회적경제 주체의 공공서비스 우선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 개선
3. 공공시설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⑨ 공공분야 서비스 사업의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운영 확대

1.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시설 및 사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운영 확대
2.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산화 전략을 통한 사회서비스 시설 확충

⑩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활성화

1.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운영 확대
2. 위탁 받은 공공자산의 사회적가치 창출 방안과 민주적 운영 기반 마련

제도 부문의 요구

1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제정

1. 정당별 사회적경제 기구 구성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2.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통합적 전달체계 논의
3. 사회적경제 관련법 발의·제정

2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도모

1.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및 제도 마련
2.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보교류와 협업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및 제도 마련
3.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성에 필요한 기반 및 제도 마련

3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법제의 정비

1. 사회적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선
2.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있어 취득세 과세 문제 해결
- 3.登記법제의 행정효율성 개선

4

지역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1. 지역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 조례의 제정
2. 지역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를 위한 민·관 협의 구조 마련
3. 지역 사회적경제 기금이 전문성 있는 민간 사회적금융 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법 개정
4.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이 조성한 자조기금에 지역기금 매칭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법으로 사회적경제를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음. 하지만,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을 지칭하는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표현으로 통용되고 있는 형편임. 사회적경제의 법률적 정의와 함께 범주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6개 지자체가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조례 또는 육성·지원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단체장의 의지와 정책에 의존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음. 상위 법규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부재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의 가장 큰 위협 요소임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라는 공통적인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이 전개되기보다는,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담당),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담당), 마을기업(안전행정부 담당),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담당) 등 기업형태 별로 담당하는 중앙부처별 이해관계와 활동범위에 따라 정책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음. 지방정부 내에서도 관련 부서와 행정처리 등이 상이하게 펼쳐지고 상황.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의 본질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하고, 이를 개선할 통합적인 제도와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함
-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함께 지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과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새롭게 발의하고 제정해야 함. 이른바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은 사회적 경제 영역의 숙원에 한하지 않으며, 사회적 가치 정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며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될 것임. (※ 전국 광역지자체 중 11개 지자체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거나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

■ 중점과제

1. 정당별 사회적경제 기구 구성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 ① 정당별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당 차원의 사회적경제 연구 및 비전 수립
- ② 민간과의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내용 성안 및 발의

2.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통합적 전달체계 논의

- ① 정의, 범주, 정부·지자체의 역할·의무, 정책 방향과 원칙, 행정·거버넌스 체계 등 사회적경제의 개별성을 아우르는 근거법과 매개법 형태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②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대비해 통합적인 제도와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 본격화

3. 사회적경제 관련법 발의·제정

- ①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제정
- ②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발의·제정

- 인구의 약 49%,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36.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1,000대 기업 본사 4곳 중 3곳이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음. 도로와 철도 등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안전, 복지, 환경, 문화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의 차이 또한 최대 50배에 달하는 등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는 한국 사회의 오랜 숙원임. 그동안 지방정부들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외부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방식은 지역주민의 삶과 별개로 진행되기 일쑤였고,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휘청이게 하는 허약한 체질로 변모시켰음.
- 사회적경제는 지역경제를 ‘포용성장’과 ‘지역순환경제’, ‘자치’의 관점에서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며, 지역민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내 재화와 서비스를 연계하고, 해당 지역의 구성원들 사이의 민주적 협치를 통해 지역의 내생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지역주민에 의해 소유되고 지역주민에 의해 함께 운영되며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사회적경제의 육성과 순환적 생태계 조성 필요.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며,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가 지역 자립과 경제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주체로 역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중점과제

1.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및 제도 마련

- ① 지방정부 중심의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축하여 정책역량 제고
- ② 지방정부 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서 칸막이 차단

2.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보교류와 협업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및 제도 마련

- ① 공공서비스 사업 등 협업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진입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②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소셜캠퍼스온 등 정보교류와 협업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시설 확충

3.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기반 및 제도 마련

- 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근거를 반영한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정
- ②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기본계획’ 수립
- ③ 중앙정부의 정책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전담조직(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정책전달체계 구축

3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법제의 정비

-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개인의 이익을 포함해 공동체의 안녕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성 높은 기업활동이 증대되어야 할 때임.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장려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일반 국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이 목적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은 여타 사회적 기관에 비해 제한을 받고 있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와 사회적기업의 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낮아 민간자원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지 못한 형편임.
- 자본기업이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생산된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과 달리, 협동조합은 상호자 조성을 기초로 생산된 잉여를 조합원의 편익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짐. 현재 대한민국의 조세법제 대부분은 자본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을 기초로 편성되어 있음. 따라서 자조적인 사업조직에 대한 육성정책은 그 고유한 특성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조세법제 등 기업 환경의 정비가 중요.
- 정책 수립과 집행의 전 과정은 실질적인 현황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함. 현대, 현재 협동조합 법인의 특수성(임원 임기 제한, 출자금의 잦은 변동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기비용 증가, 신속한 창·폐업 처리 등이 불가한 상태의 협동조합 통계에 의존해 허수가 발생하고 있는 형편.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촉구하고자 함.

■ 중점과제

1. 사회적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선

- ①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로부터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으로 확대
- ②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별표 6의3'의 대상에 영리 사회적기업도 포함시켜서, 민간자원 유치를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도모
- ③ 사회적기업 기부금에 대한 법인소득 10% 공제한도를 30~50%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용이하도록 함
- ④ 사회적기업의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 인정을 30~50% 수준으로 확대

2.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있어 취득세 과세 문제 해결

- ① 협동조합기본법 제 60조의2 일반 영리기업의 협동조합으로의 변경, 제 105조의2 협동조합과 민법 및 민법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조항이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② 변경전후의 조직의 동일성을 명확히 하여 명의변경등기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상업등기법 준용규정이 있으나, 등기절차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음
- ③ 변경전후의 조직 동일성을 명확히 하는 등 등기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함

3. 등기법제의 행정효율성 개선

- ① 인터넷등기소 협동조합 관련 서식 지원하여 일반 국민의 이해와 접근 편의 제고
- ② 협동조합 출자금 변경 등기 시 의사록 증빙 요구는 협동조합의 가입/탈퇴의 자유 원칙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선 조처 필요

-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7) 발표 이후 사회적 금융 규모는 증가했으나, ▲중앙 공공자금 중심 ▲수도권 중심 ▲사회적기업 중심의 공급 특성을 보임
- 이에 '자금 공급의 쏠림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지역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및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에 의한 자조기금 조성에서 찾고 있음.
-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7) 발표 이후 기금이 설치된 곳은 세종시와 서울시 강동구 2개 자치단체이며, 이중 별도의 사회적경제 기금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세종시 1곳에 불과한 상황임.
- 지역기금은 사회적경제의 지역균형 발전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상황과 기업 간 균형 성장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기 때문에 중앙 차원의 공급 프로그램에 비해 당사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나 운용의 유연성이 높음.
- 자조기금은 금융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정책 금융에 접근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금융 문제를 해소하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음.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화성시의 경우 자조기금에 지역 기금을 매칭해 자조기금의 규모화를 돕고 있음.
- 지역의 기금과 자조기금의 순기능에 주목해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중점과제

1. 지역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 조례의 제정

- ① 사회적경제 기금 관련 조례의 별도 제정
- ② 차선으로는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기금 설치 근거 조항 개정

2. 지역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를 위한 민·관 협의 구조 마련

- ① 사회적경제의 금융 수요 조사, 사회적금융을 위한 민간 금융 기관 파트너십 형성
- ②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

3. 지역 사회적경제 기금이 전문성 있는 민간 사회적금융 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법 개정

- ① '15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관리, 운용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위탁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법 개정 필요
- ② 위 법률 조항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해당 기금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는 것이지만, 원금손실 위험 등의 이유로 보수적으로 운용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운영하여 기금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사회적금융 전문 중개기관 등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 조항 개정

4.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이 조성한 자조기금에 지역기금 매칭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 ① 단기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등에 자조기금(공제) 조성에 공공재원 매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 조항 개정
- ②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자조기금에 공공재원을 매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자조기금 활성화

일자리 균형발전 부문의 요구

5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1. 초·중·고 및 대학(원) 공식·비공식 교육과정의 사회적경제 교육 접근성 확대
2. 취·창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넘어 주거·금융지원 등 종합 정책으로 변화
3. 청년 당사자의 주체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6 사회적경제를 통한 프리랜서(플랫폼) 문제해결

1.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및 협의회 활성화 지원
2.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
3. 당사자조직을 포함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7 사회적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1.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기반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2. 소상공인의 자기개발 및 휴식을 위한 휴가제도 마련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소상공인 인력지원 사업 시행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청년세대는 기후변화에 있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음. 각종 기후변화 행사에서 청년세대의 참여 공간이 확대되며 청년세대의 목소리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구색을 갖추기 위한 기성세대의 악세사리라는 ‘Youth Washing’이라는 비판도 있음. 청소년과 청년 스스로 기후변화 문제를 고민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지렛대로 ‘사회적경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
- 사회적경제가 만들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청년 일자리는 상용직, 임노동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관점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움. 기존의 취·창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넘어 교육·주거·금융지원 등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종합 정책으로의 변화 필요
-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적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청년의 참여 확대 및 보장 필요
-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청년이 청년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 및 조례의 발의와 제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 보장 및 확대 필요

■ 중점과제

1. 초·중·고 및 대학(원) 공식·비공식 교육과정의 사회적경제 교육 접근성 확대

- ① 초·중·고 및 학교교육과정에서 사회적경제를 접할 수 있도록 의무화
- ②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지급되던 장학금 제도를 사회적 약자(저소득층·다문화가정)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그 중 일부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회적경제 국가장학금’ 항목 신설 제안
- ③ 경제교육지원법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3항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포함시키고, 민간 영역의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지원

2. 취·창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넘어 주거·금융지원 등 종합 정책으로 변화

- ①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의 정책대상 연령 범위를 35세까지 확대하고, <아동복지법> 보호대상 종료 아동(청년) 종료 후 5년 이내를 정책대상 범위로 편입
- ② 사회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및 취약계층 청년 15% 이상 우선 배정 등 청년세대의 주거불평등 해소
- ③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의 융자요건 완화 및 신탁법 개정을 통한 ‘청년신탁’ 등 특수목적 사회적 금융 기관 확대를 통한 금융안전망 형성

3. 청년 당사자의 주체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 ①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 및 조례의 발의와 제정 과정에 청년부분 참여 보장
- ②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청년부분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 시 사회적경제 분야 포함

- 한국사회에서 비정규, 특수고용, 비공식노동자의 문제가 화두가 된 지는 오래되었음. 정부의 정책에 의해 비정규직의 처우는 개선되고 있으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차츰 해법이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러한 이들을 보호하는 법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IT기술의 발전을 중심으로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등장하고 있으며 특수고용, 비공식노동자들뿐 아니라 기존의 독립노동에서 업무의 외주화를 배경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프리랜서들도 빠르게 플랫폼으로 유입되고 있음.
- 문화예술·IT 등 프리랜서 65만 명 중 약 36만 명, 음식배달노동자 약 8만 명 중 약 1만 명, 30만 가사노동자 중 약 5만 명, 대리운전노동자 13만 명이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일거리를 얻고 있음. 현장에서는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노동자-비공식노동자들이 서로 중첩되고 있는 상황.
- 전통적으로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온 이들에게 플랫폼의 확대는 초단시간 일회성 호출 노동을 상시화함으로써 고용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서, 2019년 ILO는 ‘일의 미래를 위한 100주년 선언’에서 ①기술 발전은 공정하고 평등한 일의 미래에 기여해야 하며, ②사회정의와 양질의 일자리에서 지금까지 배제된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특히 플랫폼 경제에 대해 혁신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③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의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선언했음.
- 실제로 외국에서는 당사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플랫폼을 자체 운영하거나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 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한국에서 이들 노동자의 처지는 더욱 열악함. 따라서 법 제도의 정비와 병행하여 대표적 자조모델인 사회적경제를 통해 이들에게 안정적 일자리·일거리와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중점과제

1.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및 협의체 활성화 지원

- 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설립·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조직 설치
- ②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 ③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소셜프랜차이즈화 적극 지원

2.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

- ① 플랫폼-프리랜서협동조합 협의체를 공동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해 직업훈련, 산업안전 교육을 위탁
- ② 노동공제회 설립 지원을 통해 상호부조 외에 고충 상담,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병행 제공(건설노동자공제회의 사례 참조)

3. 당사자조직을 포함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 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등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발족
- ② 대화 기구를 통해 중장기적인 플랫폼-프리랜서 보호정책 및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사회적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8%, 종사자 수 38%를 차지할 만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협동조합은 사업 주체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협동조합을 통한 전략적 제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위임된 사업을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역량과 협업을 통해 규모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
-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창업 후 제대로 된 휴식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자기개발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소상공인 인력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자기개발 및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중점과제

1.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기반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 ①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설립 및 운영지원: 기존 소상공인을 위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을 개선한 협동조합 정체성에 기반한 업종별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설립 및 운영 지원
- ②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공동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본부 간 협업 지원을 통해 영세 프랜차이즈 본사의 혁신 성장 및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확산에 기여
- ③ 협동조합 경영전문가 파견지원: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업을 이해하는 경영전문가를 파견하여 업무지원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경영활성화에 기여

2. 소상공인의 자기개발 및 휴식을 위한 휴가제도 마련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소상공인 인력지원 사업 시행

- ① 365일 쉬지 않고 일하는 소상공인의 자기개발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시간투자 및 휴식을 위한 휴가제도 마련
- ②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인력지원 사업 도입.
- ③ 사회적경제 조직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활용 휴가기간 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이 정상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

공공혁신 부문의 요구

8 생활SOC,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과 시민의 자산으로

1.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주체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 구축
2. 사회적경제 주체의 공공서비스 우선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 개선
3. 공공시설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9 공공분야 사회서비스사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 운영 확대

1.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시설 및 사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운영 확대
2.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산화 전략을 통한 사회서비스 시설 확충

10 유희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 활성화

1.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운영 확대
2. 위탁 받은 공공자산의 사회적가치 창출 방안과 민주적 운영 기반 마련

- ‘생활 SOC’는 기존의 SOC 패러다임을 ‘효율·기간시설’ 중심의 양적 투자에서 ‘사람·지역중심의 질적 투자로 전환하는 정책임. 생활 SOC는 지역주민들이 여가와 건강 활동을 누리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일자리와 활력을 제고하며, 생활안전이나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
 - * 다부처·다년도 묶음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의·조정하는 수평적 협약 체결
- 부처가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지역(마을)과 시민 중심의 생활 밀착형 생활혁신공간을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협동생산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900개의 사업*이 선정돼 2020년(약 3,417억)부터 최대 3년간 8,50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거나, 지역을 잘 이해하고, 그 성과를 다시 지역에 파급할 수 있는 실행주체에 대한 기준이 미흡한 형편.
 - * 2019년 선정된 국비보조사업(705개) + 타 국고보조사업(32개 ex, 작은영화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 지자체자체사업(163개 ex, 청소년수련관·장난감도서관 등)
-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주거주차장 등 900개 사업 대부분 설립은 물론이고 사후관리 비용이 적지 않을 것임. 설립준비 과정에서 사후관리 방안 마련까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마을과 시민사회의 협업과 협동 생산 및 운영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함.
 - * 서울에서 재건축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등에서 민간 사업자가 용적률 상향 등을 받기 위해 공공기여시설로 체육관, 도서관 등 각종 생활형 SOC 건설 제안을 하지만 자치구에서는 유지·관리가 어렵다며 생활형 SOC 건설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음
- 이에 생활SOC 성공을 통한 지역(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연계 정책을 제안함.

■ 중점과제

1.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주체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 구축

- ①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생활SOC 민·관 추진단 구성
- ② 주민 참여형 비영리조직(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 참여형 비영리적 기업(사회적기업 및 주민이 조합원인 협동조합), 지역기업 등의 순으로 개발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위탁에 대한 우선권 등 사회적자본에 의한 주민 참여 우선 원칙 명확화

2. 사회적경제 주체의 공공서비스 우선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 개선

- ① 민간위탁 사업과 보조금 사업 관련 사회적경제/민간위탁/보조금관리/공유재산관리 제도(조례) 등 지방자치법의 연계적 제·개정 필요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업, 지자체 수의계약 체결가능 금액 5천만원 이

하로 확대된 것의 실효성 강화 등

- ② 사업 설계 시 지역의 자산(시설)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자산(시민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이 지역에 선순환하도록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발굴 및 참여 촉진

3. 공공시설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 ① 공공시설을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시민참여형 기업(주민이 중심인 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때 수익시설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도 마련
- ② 생활SOC 담당 현업부서와 계약부서가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책임조달 강화

-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공분야 사회서비스사업*의 수행 주체 혹은 선량한 관리 주체로 사회적경제조직을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만족도 제고가 요구됨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서비스 중에서 우선 '보건의료·교육·고용·주택 분야에서 노인·아동·장애인·환자 돌봄 서비스를 범주로 함
-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사회서비스 공급과정에서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격 인증사회적기업)에게 시설 및 사업 위탁 운영을 확대
-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훈련기관, 1차 의료기관, 지원주택 등 사회서비스 공급시설을 사회적경제조직이 자기자본으로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시설 자산화 방안을 추진

■ 중점과제

1.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시설 및 사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운영 확대

- ① 노인요양시설, 국공립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노동집약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의 효과가 있는 시설의 위탁 주체로 사회적경제조직*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비영리법인(이하 같음)
- ②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장애인),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개인위탁비율이 높은 시설의 수탁 및 운영주체로 사회적경제조직 비율 제고
-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돌봄 사회서비스 개발(지역사회투자서비스와 선도사업), 사회서비스 제공사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 운영을 확대
- ④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하는 종합재가센터와 사회적경제조직*의 협업체계 구축
*종합재가센터 개설시 동일 지자체에서 재가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사전 협의, 홍보와 교육 등 협업체계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전략 마련

2.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산화 전략을 통한 사회서비스 시설 확충

- ①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마중물 기금을 조성하고 시장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1차 의료기관, 훈련기관, 임대·지원주택 등
 - 정책자금 지원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고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장기상환되는 프로그램(저리 이자와 30년 이상의 상환조건 등) 개발
- ②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취득, 운영하는 경우 취득등록세(신생법인에 대한 중과세), 재산세, 지방세(종업원분) 등 성장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제공

-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목적인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요
-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수단의 한 축인 공공자산의 활용이 매우 중요
- 유휴 공공자산을 사회적경제조직의 위탁운영하도록 하여 방치된 공간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제공의 거점으로 활용
-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유휴 공공자산을 사회적경제조직 위탁하여 적극적인 개발·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

■ 중점과제

1.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운영 확대

- ① 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자산 중 활용도가 낮은 자산을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위탁하여 관리토록 근거 마련
- ② 유휴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사회적경제조직간 제한경쟁입찰 제도 근거조항 신설

2. 위탁 받은 공공자산의 사회적가치 창출 방안과 민주적 운영 기반 마련

- ① 유휴 공간 등 공공자산을 위탁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② 공공자산을 위탁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주민과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참여하는 ‘공유자산 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공동체신탁’ 등을 설립하여 공동체 자산화할 수 있는 조항 마련

사회적경제 부문별 정책 제안

1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대비 방안
- 사회적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선
- 사회적기업 자조기금 활성화 기반 조성

2 자활기업

-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법제화)
- 공공기관 법적 의무구매 대상에 자활기업을 포함 (법개정)
- 자활기업에 대한 자활기금 지원 활성화

3 마을기업

-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4 협동조합

- 기본법과 개별법협동조합 간 연합회설립 허용
- 협동조합 우선주제도 도입
- 협동조합 전자투표, 서면투표제 도입

5 공정무역

- 공정무역 지원 근거 및 소비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6 공동육아

- 사회적경제 기본법 내 공정무역 지원 근거 마련
- 공공조달 내 공정무역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I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대비 방안

〈 개 요 〉

- ❖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 시,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법 개정)과 예산의 증액 등의 방안 마련

1 제안 배경

-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곳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정의)
-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직·간접적인 지원의 자격요건이 되며, 무분별한 진입의 통제 역할을 하며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안착에 기여하였으나, 지원예산이 중앙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산입되면서 지원의 자격요건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제도권 이탈 및 기업의 증가 수 정체, 이윤배반 행위 가능, 절차의 복잡성과 행정관리 고비용 소용,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정책과의 낮은 정합성, 자율성 침해 등의 복합적 문제를 수반하며 개편의 요구가 대두됨.
- ◇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될 경우, 일반기업 또는 불순한 의도·목적 가진 기업들의 난립, 사회적기업 브랜드 가치의 저하, 가점제도·수의계약범위 확대 등 공공조달 관련 배려정책의 백지화, 대외적 신뢰도 하락, 기존 인증 기업의 처우 및 차별성 저하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예산 증액이 필요함.

2 제안 내용

◇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

- 등록제 도입의 과급·영향 등에 대해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법인격 신설.
- 다중목적(사회적·경제적 가치 통합 추구) 인정과 이윤배당 제한(자산의 사회적 소유)을 골자로 하는 법인격 신설을 제도화(가칭 사회적목적법인)하여 영리와 비영리 혼합 성격의 사회적기업 조직형태에 적합한 법인격 마련.

◇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에 대비한 예산 증액

- 사회적기업이 기존 인증제도에서 등록제도로의 개편이 예고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급격한 양적 증가와 관련 지원제도의 전면적 개편, 관리방안 신설, 사회적가치 평가 체계 도입 및 실행 비용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예산 증액과 관련 방안 마련.

II

사회적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선

< 개 요 >

- ❖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이 보다 많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1 제안 배경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사회적기업은 이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조직의 유형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의 영위 자체가 사회적 가치·목적 창출 등의 사회공헌과 직결됨.
- ◇ 사회적기업은 복지·공공서비스·사회문제해결 등의 사회적 가치를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업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2 제안 내용

◇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의 연장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3년 동안 100%, 이후 2년 간 5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
- 그러나 공익적·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리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이윤극대화가 목적인 일반영리기업과 달리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또한 인건비나 사업개발비 지원이 종료(예비 2년 + 인증 3년)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거의 없어 사회적기업이 성장하여 더 많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으로 확대

◇ 영리 사회적기업 기부에 기부금 인정

-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별표 6의3'에 따라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과 비영리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 사회적기업에 기부를 할 경우에만 기부금으로 인정됨.
-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원 유치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 ☞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내용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과 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를 하더라도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자원 유치를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민간)

- 사회적기업에 기부를 하는 행위는 그 효과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익성 담보를 전제하고 있지만, 현재 사회적기업에 기부를 하더라도 그

기부금의 법인소득 10% 범위 내에서만 공제한도(손금 산입)가 처리됨.

- 공제한도 혜택이 적어 기부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민간자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의 경우 50% 한도로 손금 인정)

☞ 사회적기업에 기부를 할 경우, 공제한도를 30~50% 수준으로 확대하여 민간자원 유치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 필요

◇ 사회적기업이 기부하는 경우에도 공제한도 확대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
- 하지만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맞게 기부에 사용하더라도 20%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인정됨.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에 맞게 기부행위를 할 경우에는 손금산입 인정을 30~50%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을 더욱 독려하고 혜택을 마련하는 방안 필요

III

사회적기업 자조기금 활성화 기반 조성

< 개 요 >

-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책무를 안고 경영을 영위함으로 인해 자금기반이 취약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조기금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1 제안 배경

- ◇ 대다수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인해 시장경쟁력과 생산성이 낮거나, 영업이익 창출이 어렵고, 이익창출을 위한 시간이 인내가 필요하므로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 자금 등의 경영기반이 취약함.
- ◇ 이러한 부실 경영기반으로 인해 담보 등의 보증력도 약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금융 대출 등의 자금 조달도 어려운 실정이며, 인건비 등의 정책지원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

- ◇ 따라서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의 협동과 자조 정신을 바탕으로 조성된 기금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과 생활의 안전망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2 제안 내용

◇ 사회적기업 공제기금의 제도적 기반 조성

- 사회적기업 공제기금은 사회적기업이 가입하고 부금을 납부하여 조성된 기금을 사회적기업이 자금조달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협동·자조·상생의 기금임.
 - ☞ 현재 사회적기업 당사자조직을 통해 조성된 사회적기업 공제기금의 활성화와 안전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에 공제기금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여 기금의 용도와 목적, 사업내용 등을 명시, 법적 근거를 마련
 - ☞ 사회적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공제기금 납부금에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여 공제기금 가입을 유도하고, 공제기금의 안정적 운용 기반 마련

I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법제화)

1 제안 배경

- ◇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사업의 과정을 거쳐 생성된 자활기업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 ◇ 사회적기업이 관련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동조합이 관련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것에 비해, 자활기업은 관련법(국기법)에 중장기 계획 수립 근거가 없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매년 지원내용이 수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이 요구되어 짐.
- ◇ 보건복지부는 최근(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5년)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한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활기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지원계획 수립의 지속성이 불투명한 상황임.
- ◇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의 하나의 축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행정에서 자활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음.

2 제안 내용

- ◇ 보건복지부는 자활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거쳐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포함하여야 함.
-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관련 지침상에 위와 같은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함.

II

공공기관 법적 의무구매 대상에 자활기업을 포함 (법개정)

1 제안 배경

- ◇ 자활기업은 수급자, 차상위층 등이 낮은 노동능력과 취약한 경제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기업을 운영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판로 개척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구매 대상은 중소기업, 신기술, 기술개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장애인기업으로 국한되어 있고,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입에도 의무구매 대상에서 빠져 있음.
- ◇ 최근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정책 대상으로 자활기업도 포함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구매시 자활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자활기업 제품, 서비스에 대한 구매 실적 관리 및 평가 반영에 관한 사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우선구매가 추진되지 않고, 지자체 또는 기관마다 선택적으로 구매가 진행되어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우선구매 정책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 자활기업이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식되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 의무구매 대상으로 포함될 필요성이 있음.

2 제안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해야 함.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자활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자활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안 배경

- ◇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기금 (또는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자활기금(사회복지기금)은 자활기업이 임대자금, 사업자금, 노후시설장비교체자금,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등을 저리 (1%) 또는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법 및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
- ◇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기금 집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채권이 보장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자활기업의 기금 활용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임.
- ◇ 자활기업에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지원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거나 대표자의 신용도가 낮은 자활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자활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과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권고 및 대안적인 보증제도가 필요함.

2 제안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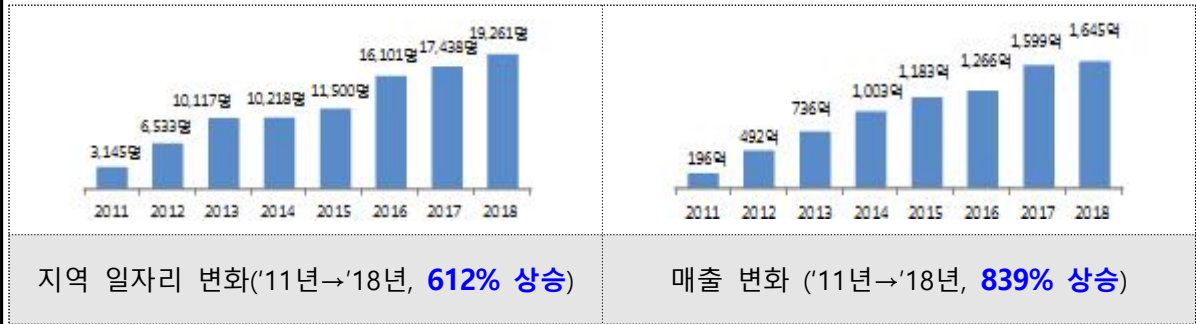
- ◇ 보건복지부가 중장기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 자활기금 운용 및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는 자활기금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야 함.
- ◇ 자활기업의 자활기금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
 - 중앙, 광역, 기초지자체의 자활기금(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실적을
- ◇ 매년 취합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I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 개 요 >

❖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일자리와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농산물 가공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



※ (운영 현황) 마을기업 1,592개소에서 일자리 19,261개, 매출 1,645억원 발생

1 제안 배경

- ◇ (마을기업 근거법 마련) ‘10년부터 지침에 근거해 운영 중인 마을기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
 - ◇ (지속적인 육성 정책) 법적인 근거 없는 관계로 매년 마을기업 예산의 감소가 신규 마을기업의 발굴 저해 요소로 나타남
 - ◇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 초기 창업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정책을 다각화하여 기업의 특성·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자립지원 필요
- ※ 특히, 마을기업 현장에서는, 공공구매 등 법령상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마을기업의 육성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

2 제안 내용

- ※ ‘19.5.15. 박정 의원 등 10인 발의, 5.16. 행안위 회부
- ◇ (총칙) 마을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책 추진 목표와 방향 규정
 - ◇ (마을기업 추진체계) 체계적·장기적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중앙·광역단위 지원기관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 ◇ (마을기업 지정·육성) 지정부터 취소까지 마을기업의 전 과정을 규정하고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I

기본법과 개별법협동조합 간 연합회설립 허용

〈 개 요 〉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이종간 협동조합연합회란 다양한 업종의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하는 경우로 이탈리아의 LEGACOOOP과 같이 소비자, 생산자, 농업, 주택,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른 업종 협동조합들이 사업적 필요에 의해 만드는 연합회 형태의 협동조합임

1 제안 배경

- ◇ 근거 법률을 달리하는 동종업종의 협동조합들이 연합회를 만들 수가 없음. 이에 지역에 설립된 일반협동조합이 생협연합회에 가입하려 하여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결국 생협연합회에 가입하기 위해, 일반협동조합을 해산하고 생협으로 다시 설립하는 일이 발생
- ◇ 현재 법률상, 기본법 생산협동조합(농민협동조합)과 생협(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사업연합회로 발전할 수 없음
- ◇ 두 협동조합의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해 사업연합회의 형태로의 발전이 가능하다면 공동의 상생을 위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eg. 생산-소비 물품의 기술개발, 품질관리사업 등)

2 제안 내용

- ◇ 이종 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허용하도록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 이를 통하여 자본 등이 부족한 기본법 협동조합들이 선배협동조합인 신협, 생협 등과 협력하여 규모화된 사업 추진이나 사업적 네트워크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개 요 〉

- ❖ 우선주제도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조합원의 출자나 어떤 주식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조건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으로, 이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은 없음

1 제안 배경

- ◇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업의 이용자인 동시에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우선출자의 대상자로 적격하며 협동조합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은 출자 규정에 우선출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농협, 축협, 수협은 1999년, 새마을금고는 2011년에 제도를 시행하였음
- ◇ 해외의 경우, 프랑스 등 입법사례도 이미 존재함. 또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각 나라에서 협동조합의 우선주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임

2 제안 내용

- ◇ 우선출자제도를 통해 협동조합은 외부에서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추가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결권,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출자금의 다소와 관계없이 1인1표로 지배해야 한다는 협동조합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음.

< 개 요 >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란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이메일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1 제안 배경

- ◇ 신종 코로나와 같이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모여 총회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의 경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없이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이 필요함
- ◇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제안 내용

- ◇ 협동조합 규모 및 조합원 지역 분포 등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요건에 따라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I 공정무역 지원 근거 및 소비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개 요 >

- ❖ 공정무역(Fair Trade)은 공급사슬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소규모 생산자들의 삶을 지속가능하도록 돕는 대안무역으로, 무역 구조를 공정하게 변화시키고 소규모 생산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삶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존의 원조와는 달리 빈곤 해결에 있어 포괄적·다차원적 접근을 추구하는 공정무역은 전 세계적으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음

1 제안 배경

- ◇ 한국의 주요 공정무역 단체들은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로서 영리 중심 기업보다 자본조달 및 판로확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최근 공정무역 마을운동이 확산되면서 참여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지역 중심 지원정책이 일부 마련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기반 공정무역단체들의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공정무역 지원정책은 부재한 상황임
- ◇ 지속가능한 공정무역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중심의 공정무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공정무역 주요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됨

2 제안 내용

- ◇ 사회적경제 기본법 내 공정무역 지원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기본법 내 공정무역을 포함시켜 사회적경제 내 공정무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향후 지원정책의 법률적, 제도적 근거 마련
 - 국가차원의 포괄적 공정무역 정책 마련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공정무역 단체, NPO, 국제개발협력기구, 학계 등 다양한 공정무역 주요이해관계자 간 협업 시스템 구축
 - 민-관 협업시스템을 통해 중장기 공정무역 지원정책 및 추진전략 마련(총칙) 마을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책 추진 목표와 방향 규정

- ◇ 공공조달 내 공정무역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련 기준 신설
 - 각 기관 조달 담당자에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의무화
 - 공공기관의 공정무역제품 구매 확대는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 경영기반이 취약한 공정무역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지속가능성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향후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정부정책을 통해 민간부분에 긍정적 신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I

공동체가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 마련

< 개 요 >

- ❖ 아동 돌봄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일로서, 국가와 공동체, 각 가정이 함께 해야 할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는 아동 돌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는 아이들이 잘 자라고 양육자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바뀌어야 하며, 각 가정은 스스로 양육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아이를 함께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 개별 육아에서 공동육아로 바꾸기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위하여 ‘품앗이공동육아 활성화’, ‘협동어린이집의 사회적협동조합 법인화’, ‘공동육아(아동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등의 국가적 지원 제도 신설 및 확대가 필요하다.

1 제안 배경

- ◇ 아동 돌봄은 한 개인이나 가정이 아니라 이웃, 공동체, 마을이 함께 해야 하는 영역임. 출생률 저하, 아파트 거주 형식의 확대 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조건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육아와 아동 돌봄을 공동육아 방식으로 친밀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여 육아기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
- ◇ 20여 년 간 교사와 양육주체들이 함께 운영해 온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은 어린이집, 품앗이공동육아, 초등방과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운영하며 아동 돌봄의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와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육아의 가능성을 모색해왔음. 일상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훈련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시민 리더를 배출하는 등 공동육아, 육아의 협동이 높은 출생률을 유도할 뿐 아니라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음.
- ◇ 영유아기부터 초등기까지의 아동 돌봄을 협동의 방식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법 제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민주시민을 키워내고,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활성화하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회에 대한 신뢰를 키워나가 ‘돌봄 사회’로 가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제안 내용

◇ 품앗이공동육아 지원 사업

- 양육주체들이 삼삼오오 품앗이를 구성하여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제도 마련.
*2001년부터 서울시는 ‘육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진행하여 연간 50여 팀이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음.
- 품앗이공동육아에서 공간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마련 등 적극 협력이 필요함.

◇ ‘협동어린이집’ 운영체의 사회적협동조합 법인화 추진

- 2018년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 3만7천여 곳 중에서 협동어린이집은 167곳임. 협동어린이집의 운영체는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임의단체조합 등이 혼재되어있는데, 이를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지원이 필요함.
- 협동어린이집 운영체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정하여 법인으로서 사회적·제도적 책임을 표준화하면 불필요한 규제, 주무부처나 지자체의 운영체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서 민간 협동조합 모델 적극 활용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서 신규 위탁모델 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기관 운영 모델을 다양화해야 함.
- 특히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성장시켜온 협동조합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민관협력모델로 협동조합형 다함께돌봄센터 모델을 확산 모델로 설정하여 정부 지원을 결합하게 되면 운영방식과 교육내용 모두에서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공동육아(아동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협동어린이집,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등에서 양육주체와 교사가 함께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을 신

장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 지원이 필요함.

- 개인 운영 중심인 ‘지역아동센터’의 법인화, 그리고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참여’와 ‘협동’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틀과 내용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공동육아(아동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립하여전문적이고 일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